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

1. 개정 이유

체육시설법 개정(24.10.22.)에 따라 체육시설업자가 휴·폐업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통지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개정

2. 주요 개정 내용

○ 체육시설업 휴·폐업 사실 미통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함

(시행령 제26조 관련 [별표 4] 2. 개별 기준을 개정)

2. 개별 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사.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	법 제40조 제1항제5호			
1) 휴업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		50만원	75만원	100만원
2) 폐업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		100만원		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합의 필요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예고 예정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4 제2호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제1항제5호”를 “제1항제6호”로
하고, 같은 호 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제1항제6호”를 “제1항제7호”로
하며, 같은 호에 다음과 같이 사목을 신설한다.

< 2. 개별 기준 >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다.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경우	법 제40조 제1항제6호	13만원	25만원	50만원
바.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경우	법 제40조 제1항제7호	25만원	50만원	100만원
사. 제29조제3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(신설)	법 제40조 제1항제5호			
1) 휴업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		50만원	75만원	100만원
2) 폐업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		100만원		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시행령 별표 4.(과태료 부과기준) 제2 개별기준

현행					개정안				
2 개별 기준					2 개별 기준				
위반행위	근거 법조 문	과태료 금액			위반행위	근거 법조 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 반	2차 위 반	3차 이 상 위 반			1차 위 반	2차 위 반	3차 이 상 위 반
다.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법 제38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경우	법제 40조 제1항 제5호	13 만 원	25 만 원	50 만 원	다.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법 제38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경우	법제 40조 제1항 제6호	13 만 원	25 만 원	50 만 원
바.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법 제38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경우	법제 40조 제1항 제6호	25 만 원	50 만 원	100 만 원	바.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법 제38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경우	법제 40조 제1항 제7호	25 만 원	50 만 원	100 만 원

현행					개정안				
위반행위	근거 법조 문	과태료 금액			위반행위	근거 법조 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 반	2차 위 반	3차 이 상 위 반			1차 위 반	2차 위 반	3차 이 상 위 반
<신 설>					사. 제29조제3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	법제40조 제1항 제5호			
					1) 휴업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		50만 원	75만 원	100만 원
					2) 폐업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		100만 원	-	-
<신 설>					부칙				
					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			